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립대학병원 등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기부금품법 적용 배제〉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40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29.
3. 회 부 일 : 2025. 9.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제한적인 사항 외에는 접수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으면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이 제한되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연구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민간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 12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3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4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1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해당 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을 전제로,¹⁾ 이들 병원이 각 개별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 3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설>	1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신설>	1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신설>	1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신설>	1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사·경영·예산 등의 실질적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됨.²⁾

1) 이 개정안은 2025년 8월 29일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3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4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1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또한, 직접적인 ‘모집’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탁’³⁾하는 금품 역시 원칙적으로 접수가 제한되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탁 금품의 접수가 허용됨.⁴⁾

현행법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기부금 모집을 제한하는 것은, 이들 기관이 가진 우월적 지위가 준조세적 강요로 변질될 위험성과, 민간 부담의 가중, 공공기관과 민간영역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⁵⁾

- 2)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3) 기부금품 ‘모집’: 불특정 다수 또는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로서,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아 사전 신고·등록, 결과보고, 공시 등 엄격한 법적 절차와 제한이 요구됨.

기부금품 ‘기탁’: 개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증여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기탁금 접수가 불가능하며, 법령에 명시된 예외 및 심의가 있을 때에만 허용됨.

- 4)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5) 헌법재판소 2019.11.28. 선고 2018헌마579 전원재판부 결정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자발적 외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무감에 기인한 기부금품 모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기부의 권유와 같은 행위 유형에 따라, 또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대상에 대하여만 일정 부분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것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한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하 “국립대학병원 등”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⁶⁾ 의료급여 환자 등 취약계층 진료, 아동·모성·장애인·정신질환·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 재난·감염병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총 적자 규모가 5,0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재정 및 경영 악화로 인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⁷⁾

이에,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등도 사립대학병원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여 병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공공의료 확충과 국민보건 증진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는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7) 「지난해 국립대병원 10곳 적자 5천639억7천만원…1년새 2배로」, 연합뉴스, 2025.2.18.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8137300530>

기부금품 모집방법의 특수성⁸⁾이 인정되거나, 개별법에서 모금절차와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⁹⁾로 한정될 필요가 있는바,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국립대학병원 등은 현행법상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되어 있지만, 자발적인 기탁에 의한 금품 접수는 일정한 제한 하에 가능하며, 국립대 의과대학에서는 학교 후원회 등 특정 조직을 통한 의학교육·연구 목적의 모금도 일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과정에서 민간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법 적용의 배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며, 국립대학병원 등 특례 도입 시 민간업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 타 공공기관의 모집 허용 요구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⁰⁾

8) ‘모집방법의 특수성’이란,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 대상 공개모집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소규모 모금(교직원, 동문 등), 긴급재난 구호금, 특정 목적 공익사업 등 공공적·임시적 필요에 따라 법령 및 해석상 예외로 인정된 사례를 의미함.

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10) 대한의사협회는 기부금품법의 입법취지와 공공·민간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한국자선단체협의회 등*은 기부의 자발성 훼손, 민간 기부 생태계 위축 등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5.9.).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99개 단체

문 의 처
02)6788-5338